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66

발의연월일: 2024. 7. 26.

발 의 자:김남희・이수진・황정아

김남근 • 전진숙 • 모경종

이기헌 • 이훈기 • 김 윤

백승아 · 강준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서비스질이 낮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가사 활동 등의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고해도 범죄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워 요양보호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 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권이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

원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며,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3항 및 제35조의6 신설 등).

법률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지역별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그 지역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중 "제공"을 "요구·제공"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없는 경우"를 "없는 경우나 제35조의4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장기요양요원의 처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지위를 향상시키고 장기요양기관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급,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이하 "적정 인건비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제39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8조제6항에 따른 인건비 지출 비율을 위반한 경우 제38조제6항 중 "정하여 고시하는"을 "제35조의6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② (생 략)	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	③
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	
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	
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u>한다</u> .	<u>하며, 지역별로 국·공립 장</u>
	기요양기관의 수가 그 지역 전
	체 장기요양기관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u>한다</u>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	
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3

사항

4. (생략)

② (생략)

지) ① · ② (생 략)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 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생 략) <신 설>

- <u>사형</u>	10	로 ネ	1우	개석	<u>넘,</u>	복	·지
<u> 증진</u>	및	지위	향	상을	위 :	한	방
<u>안</u>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요구・ 제공 금지) ①・② (현행과 같 유)

①			
	- <u>없</u> 는	= ;	경우나
제3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의6(장기요양요원의 처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 요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장 기요양기관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기본급, 각종 수당과 복리후 생비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요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 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 ⑤ (생 략)
 -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이하 "적정 인건비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제39조에 따
	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6조의2(시정명령)
	1. • 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제6항에 따른 인건비
	지출 비율을 위반한 경우
제	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⑥ 제35조의6에 따른 적 전 인건비 기준을 고려하여 고